##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주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30

발의연월일: 2021. 2. 23.

발 의 자:윤주경·강기윤·김희국

박대수 · 윤창현 · 이종배

조해진 · 최승재 · 태영호

홍문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렇게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대해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, 「국가공무원법」과 같이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강임) ① (생 략)	제30조(강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	②
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	
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	
우선 승진임용된다. <u>&lt;단서 신</u>	<u>다만, 본</u>
<u>설&gt;</u>	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
	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
	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
	진임용될 수 있다.